

##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4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5. 2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5. 1(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건설과장 김 용 현

나. 개정사유

- 1999. 2. 8 법률 5914호로 도로법의 일부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3 과오납금의 이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과오납금의 반환에 있어서 과오납된 점용료,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%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을 동 조례 7조의 1에 신설하고 제10조의 부담 이득금의 징수를 변상금의 징수로 하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7. 첨부 :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0. 2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도로법 일부 개정으로 인한 과오납된 도로점용료 반환규정 신설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함.

### 2. 주요내용

(안 제7조의 1)

-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

(안 제10조)

-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 개정

### 3. 관계법령

도로법 제40조, 제43조, 제78조의2, 동법시행령 제36조의3

##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1 (과오납금의 반환)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(변상금징수)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<u>(신 설)</u></p> <p>제10조 (부당이득금의 징수)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의1 (과오납금의 반환) 과오납된 점용료,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.</p> <p>제10조 (변상금의 징수)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